



보도자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2. 30.(금) 조간 2022. 12. 29.(목) 12:00	배포 일시	2022. 12. 29.(목)		
담당 부서 <총괄>	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	책임자	과장	백경순	(044-202-3340)
		담당자	사무관	김성겸	(044-202-3344)
			사무관	유운용	(044-202-3341)

2023년,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더욱 확대됩니다!

- 지원 대상 1.1만 명 확대(135만→146만) 및 서비스 단가 인상(14,800원→15,570원) -
-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록장애인 신규 지원 등 -

□ 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를 신규로 지원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1.1만 명(13.5만→14.6만) 확대하고, 시간당 서비스 단가 또한 5.2% 인상(14,800원→15,570원)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.

○ 이를 위해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은 올해 1조 7,405억 원 대비 2,514억 원 증액(14.4% 증액)되어 1조 9,919억 원 편성되었다.

○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*의 일상 생활에 밀착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로 「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.

* (지원대상) 만 6~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(1~15구간) 판정을 받은 자

□ 내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주요 확대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①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록장애인 신규 지원 등 대상자가 1.1만 명(13.5만→14.6만) 확대된다.

○ 기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으나,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하여 노인성질환*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하였다('22.6.1).

* 노인성질환 : 치매,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(별표1)으로 정하는 24가지 질병

○ 2023년 1월 개정법 시행 및 예산 반영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노인성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만을 이용하고 있던 65세 미만 장애인(약 2,720명)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대상자를 현행 13.5만 명('22년 8월 수급자 기준)에서 14.6만 명으로 1.1만 명 확대한다.

○ 이로 인해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장애인은 장기요양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지원 보전급여*를 지원받을 수 있다.

* 보전급여: 서비스지원종합조사결과에 따른 활동지원급여과 장기요양급여 간의 차이만큼을 활동지원급여로 지원하는 제도로써 그 차이가 활동지원급여의 최저 구간 점수(15구간, 42점 이상) 이상일 경우 보전급여 대상자로 선정

- 2023년 1월부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방문신청의 경우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*에서 할 수 있고, 복지포 사이트(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.

*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, 이 경우 읍·면·동에 제출사실 및 접수 여부 확인

② 시간당 서비스단가를 인상(14,800원→15,570원)하고, 가산급여 지원대상(4,000명→6,000명) 및 단가(2,000원→3,000원)를 확대한다.

○ 활동지원사의 임금수준을 향상시키고, 제공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활동지원 시간당 서비스 단가를 14,800원에서 2023년 최저임금을 인상률 5%를 상회한 5.2% 인상하여 15,570원으로 적용한다.

- 또한,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종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가산급여를 확대하여 최종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.
 - 가산급여 단가를 현행 시간당 2,000원에서 내년 3,000원으로 인상하고, 지원 대상 역시 4,000명에서 내년 6,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.
 - 이를 통해, 최종증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는 올해 시간당 16,800원(단가 14,800원+가산급여 2,000원) 대비 10.5% 인상하여 내년에 18,570원(단가 15,570원+가산급여 3,000원)을 지원한다.

③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활동지원시간 차감을 축소하여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활동을 충분히 보장한다.

- 기존에는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*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시간에 따라 최대 56시간만큼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차감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자의 활동지원시간 차감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.

* 주간활동 서비스 : 성인(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)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하여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바우처 서비스

- 그간에는 주간활동 기본형(월 132시간, 일 6시간)은 22시간만큼 활동지원 급여를 차감했으나 내년부터 차감제를 폐지하고, 확장형(월 176시간, 일 8시간)의 경우에도 활동지원 급여 차감을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축소*한다.

* '22년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은 기본형 월 125시간(일 5.5시간), 확장형 월 165시간(일 7.5시간)이었으나 내년부터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 확대

* (관련보도자료) 발달장애인의 평생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('22.11.29, 장애인서비스과)

-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“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과 밀착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필수 서비스라는 점에서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”라며,
- “특히 내년부터 신규로 신청자격이 부여되는 노인성 질환을 겪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 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국민연금공단과 긴밀히 협력하고,
- 제공인력 양성·교육체계 및 제공기관 관리 등을 비롯한 제도 전반에 걸쳐 관리 노력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- <붙임> 1.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개요
- 2.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활동지원급여 처리절차
 - 3.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신청·이용 관련 질의·응답
 - 4.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·이용 관련 법령 규정

붙임 1

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개요

1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

- (목 적) 일상생활·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,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
- (대 상)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* 판정을 받은 자
 - * 활동지원등급 : 기능상태,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를 1~15구간으로 구분
- (지원 내용) ① 활동지원급여 + ② 특별지원급여 + ③ 가산급여(중증장애인)
 - 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~15구간으로 구분 (15구간 약 60시간(936,000원) ~ 1구간 약 480시간(7,474,000원))
 - ② 출산, 자립준비, 보호자 일시부재 등 사유 발생시 특별지원급여 지급 (사유에 따라 20시간(313,000원) ~ 80시간(1,247,000원))
 - ③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최종증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가산급여(수당) 지급(시간당 3,000원)
- (급여종류) 활동보조(신체·가사활동·이동지원 등), 방문간호, 방문목욕
 - (활동지원기관) 지자체의 장이 기관의 지역적 분포, 수급자 수, 적정 공급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종류별로 지정
 - (활동지원인력) 활동보조는 교육(50시간) 이수한 활동지원사에 의해 제공되며,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,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제공
- (서비스 시간당 단가) 활동보조 15,570원/시간('23년 기준)
 - 예산 : ('22) 17,405억 원 → ('23) 19,919억 원

② 가산급여(수당)

- (개요) 최종중·발달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사 기피 해소를 위해,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활동지원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가산급여(수당) 지급('16년~)
- (지원대상)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인정되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
- (지원내용)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1시간당 3,000원('23년) 추가 지원

구 분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
단 가	680원	1,000원	1,000원	1,500원	2,000원	3,000원
편성 인원	1,800명	2,000명	2,000명	3,000명	4,000명	6,000명

□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 대상 활동지원 신청 확대

- (근거) 헌법불합치 결정*('20.12월)에 따라 활동지원법을 개정하여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활동급여 신청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(5.29)
 - * 65세 미만의 장애인 중 치매·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
- (지원방식) 65세 미만 장애인 중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 수급 자격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우선 장기요양급여를 받고,
 - 노인성 질환 중이더라도 사회생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부가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(보전급여* 제공 방식)
 - *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와 장기요양 등급별 점수를 비교하여 급여량 차이가 60시간(활동지원 최저구간)이상인 경우 장기요양에 더해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

붙임 2

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활동지원급여 처리 절차

<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처리 절차>



- (신청접수)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자격 등 확인 후 공단으로 조사의뢰
 - (신청자격) 만 6세 ~ 65세 미만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 장애인
 - 장기요양등급(1~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) 판정자 : 보전급여 신청
 - 장기요양급여 등급외 판정자 : 일반 활동지원급여 신청
 - (신청방법)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 - 방문 신청 :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
 - 온라인 신청 : 복지로 사이트(www.bokjiro.go.kr)
 - (신청서류)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 - ※ 활동지원급여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·면·동에 문의
- (방문조사) 관할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이 자택을 방문하여 급여 대상 장애인의 신체·정신 기능 제한 정도 및 생활환경 등을 조사
- (결과통지)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인에게 활동지원수급자격결과 통보
 - ※ 신청일로부터 30일(최대 60일) 이내 결과 통지
- (급여이용) 수급자가 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바탕으로 활동지원기관과 활동지원급여 이용(제공) 계약 체결 후 서비스 이용

붙임 3

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신청·이용 관련 질의·응답

Q1

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떻게 다른가요?

-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 중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서비스이며,
-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
Q2

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선택하여 수급이 가능한가요?

- 장애인활동지원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만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우선 지원받아야 하며,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전급여 방식*으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- ※ 사회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장기요양급여에 활동지원급여를 부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식
- 다만,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(등급외 판정)에는 일반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- ※ 장기요양등급을 스스로 포기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되며, 장기요양급여를 새로이 신청하여 장기요양등급 또는 등급외 판정을 받아야만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Q3

장애인활동지원(보전급여)는 어떻게 산정하나요?

- 현재의 장애인활동지원과 동일한 체계*를 적용하여 활동지원급여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차감하여 산출된 급여량을 지원하며, 급여량의 차이가 활동지원 최저구간 점수(42점) 이상인 경우에만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~15구간으로 구분
(15구간 약 60시간(936천원) ~ 1구간 약 480시간(7,474천원))

- ▶ (보전급여 산정)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종합점수 - 장기요양등급별* 점수
* 1등급(108점), 2등급(96점), 3등급(78점), 4등급(72점), 5등급(63점), 인지지원등급(63점)
- ▶ (예시) 종합점수가 255점(8구간), 장기요양2등급인 경우
→ 255점(종합점수) - 96점(장기요양등급별 점수) = 159점(활동지원12구간, 150시간)

Q4

장애인활동지원(보전급여) 신청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- 지자체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조사 의뢰를 하고, 공단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신청 장애인의 기능상태 및 생활환경 등을 조사합니다.
- 종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, 급여량 등을 심의하고, 수급자로 결정되면 시·군·구에서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를 받게 됩니다.

※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(최대 60일) 이내에 결과 통지

Q5

장애인활동지원(보전급여)는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- 수급자는 결정통지서와 동봉된 이용 안내문이나 활동지원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활동지원기관을 선택 후 급여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붙임 4

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·이용 관련 법령 규정

<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>

제5조(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) ①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
2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.
 - 가.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
 - 나.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
3. <생략>

제16조(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)) ① ~ ② 생략

③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·절차·방법·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<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>

제14조(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신청 등)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수급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이용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신청, 지급,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제15조(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) ① ~ ③ 생략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월 한도액의 산정, 이월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<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>

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

3. 월 한도액의 적용

아.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호 단서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사람의 월 한도액에 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